

# 「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□ 『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  
의회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 및 해외교류 경험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계획에 대한 심사기준 일부 항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.

- 서울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심사기준에 따라, 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, 국외활동의 목적과 방문기관의 적절성, 인원수와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,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,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, 준비의 내실성, 보고서의 충실성과 방문결과의 활용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  
- 그리고 평가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으로 1일 최소 1기관 방문이라는 하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, 방문도시 및 기관의 수용성은 고려되지 않은 기준으로, 현지 기관의 공휴일 및 주말 방문 협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.
  
- 공무국외 출장에서 방문도시의 일정 주선과 협의는 활동의 내실성 및 자료조사의 충실성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, 현지 근로 사정과 기관의 개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일정 조율은 서울시의회의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  
-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, 본 의원은 방문도시 및 기관의 수용성을 고려하고 견학 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 동 조례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의 세부 항목에서, '1일' 최소 1기관 방문 규정을, '평일'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운영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